

# 학생정원조정위원회규정

제정 2012.03.01      1차 개정 2013.03.01  
2차 개정 2018.06.01      3차 개정 2019.08.26  
4차 개정 2022.10.04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학생정원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10.4.>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본 대학의 학생정원 조정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2.10.4.>

1. 학생정원 조정 계획
2. 학과신설·통합·분리·변경, 모집정지 및 폐지 <개정 2022.10.4.>
3. 삭제 <2022.10.4.>
4. 기타 학생정원 조정에 관련된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2.10.4.>

②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6.1., 2019.8.26.>

1. 본 대학 교무위원(당연직) 중 3인 이내 <개정 2022.10.4.>
2. 제1호 이외에 본 대학 평교수 중 3인 이내 <개정 2018.6.1., 2022.10.4.>

**제4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기간으로 하고,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9.8.26.>

**제5조(회의)**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③제3조제2항의 위원이 통합, 모집정지 대상학과 소속교원인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6조(간사)**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위원장이 임명하며,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관계 교직원의 출석)** 위원장은 상정된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또는 보고를 청취할 수 있다.

**제8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4월 4일부터 적용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